

# 2024년 하반기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획 공고

동대문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8월 12일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

1. 용자규모 : 39억원
2. 용자대상 :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(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)
3. 신청기간 : 2024. 8. 20.(화) ~ 자금소진시 까지
4. 신청방법 **※ 기존과 달리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
## ① 동대문구청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(구청 지하1층)

- 방문시간 : 09시 ~ 16시
- 방문내용 : 용자상담 번호포 수령 및 필요서류 안내  
\*번호포 배부 : 먼저 도착한 순으로 배부
- 참고사항 : 용자상담 번호포 대리 수령 가능(1업체당 1인)

**※ 방문당일 용자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당일 접수할 수 없음에 유의**

## ② 용자신청 필요서류 자체 준비

## ③ 동대문구청 소상공인 지원반에서 용자신청 방문일시 개별 안내

- 안내방법 : 용자상담 번호포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선 안내

## ④ 안내받은 방문시간에 용자신청 및 필요서류 방문 제출(구청 지하1층)

- 제출방법 : 방문제출(팩스, 이메일 등 비대면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)

**※ 반드시 용자신청자 본인이 방문하여야 하며 대리방문할 수 없음에 유의**

**※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방문 필수**

## 5. 제외대상

- 금융·보험업 및 부동산업 ○ 무도장업 및 골프 연습장업 ○ 귀금속 및 게임장업
- 숙박업, 주점 및 전용면적이 330 $m^2$  이상인 음식점
- 사치·향락 및 사행성업 등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규정된 용자제외 대상을 포함하여 대출 신청서에 첨부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한업종
-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○ 휴·폐업 중인 자
- **최근 1년 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,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용자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(중요 ★★★)**
- **신청금액이 기존 신용보증서 보증금액을 포함하여 2023년 연매출의 6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,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용자신청 불가(중요 ★★★★★★★★★★)**

## 6. 용자조건

- 용자한도 : **중소기업 1억원,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**  
※ 신청일 현재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용자받고 상환 중인 경우 용자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용자금액 결정
- 용자은행 : 국민은행 동대문구청지점
- 대출금리 : **연 1.5%**
- 자금용도 : **경영안정자금**
- 상환조건 : **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**
- 담보조건 :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
- 대출조건 : **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(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)범위 내에서 대출**
  - 부동산 : 신청 후 국민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 통보
  - 신용보증서 :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(대출 신청 후 확인 가능)  
※ 연 1% 보증료, 5년치 발생

## 7. 유의사항

- 용자 신청서 심사결과 용자가 불가한 경우, 국민은행(은행에서 심사) 또는 동대문구청(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)에서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
- 용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자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
- 휴·폐업하거나 용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대문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용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음
- 상호, 대표자,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구청 및 은행에 통보하여야 함
- ※ 기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름

## 8. 문의처

- 경제진흥과 : ☎02-2127-5239, 5241 / 02-2127-4368
- 서울신용보증재단 : ☎02-2174-4701, 4706(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문의)
- 국민은행 : ☎02-961-3005(부동산 담보 평가 관련 문의, 대출 신청 관련 문의)
- ※ 문의 내용에 따라 답변 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9. 필요서류

개인사업자(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별 제출)

① **용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**

② **신분증**(반드시 대표자 방문, 대리·위임 불가)

③ **사업자등록증 사본**(없을 시 사업자등록증명 가능 ⇒ 무인민원발급기 or 민원실 5번 창구)

④ **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** ⇒ 무인민원발급기 or 민원실 5번 창구

⑤ 거주지 & 사업장 **임대차 계약서 사본**

※ 자택 : 전세일 경우 **전세계약서** / 자가일 경우 **등기부등본** ⇒ 무인민원발급기

⑥ 중소기업 · 소상공인 여부 확인 : **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**

⇒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

⑦ **국세 납세증명서** ⇒ 무인민원발급기 or 민원실5번창구

⑧ **지방세 납세증명서** ⇒ 무인민원발급기 or 구청2층세무과

⑨ 최근 3년치 **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** ⇒ 무인민원발급기 or 민원실5번창구, 홈택스

※ 면세사업자는 최근 3년치 **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**

⑩ **소득금액증명원**(2023년) ⇒ 무인민원발급기 or 민원실5번 창구

⑪ (해당업체만) **인건비 관련 증빙서류**(최근 3개월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)

⇒ 세무서, 홈택스, 사업장 세무사 발급

※ 부동산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, 그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**전입세대확인서(동거인 포함)**

⇒ 동주민센터 or 민원실5번 창구

또한, 세입자가 있다면 **임대차 계약서(세입자 전부)**

## 9. 필요서류

법인사업자(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별 제출)

① **용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**

② **신분증**(반드시 대표자 방문, 대리·위임 불가)

③ **사업자등록증 사본**(없을 시 사업자등록증명 가능 ⇒ 무인민원발급기 or 민원실 5번 창구)

④ **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** ⇒ 무인민원발급기 or 민원실 5번 창구

⑤ 거주지 & 사업장 **임대차 계약서 사본**

※ 자택 : 전세일 경우 **전세계약서** / 자가일 경우 **등기부등본** ⇒ 무인민원발급기

⑥ 중소기업 · 소상공인 여부 확인 : **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**

⇒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

⑦ (대표자&법인)**국세 납세증명서** ⇒ 무인민원발급기 or 민원실5번창구

⑧ (대표자&법인)**지방세 납세증명서** ⇒ 무인민원발급기 or 구청2층세무과

⑨ 최근 3년치 **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** ⇒ 무인민원발급기 or 민원실5번창구

※ 면세사업자는 최근 3년치 **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**

⑩ (대표자)**소득금액증명원**(2023년) ⇒ 무인민원발급기 or 민원실5번창구

⑪ 최근 3년치 **재무제표** ⇒ 홈택스

⑫ **법인인감증명서**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, **법인인감도장**

⑬ **법인등기부등본**

⑭ **정관**(2부)

⑮ **주주명부**

⑯ (해당업체만) **인건비 관련 증빙서류**(최근 3개월치 **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**)

⇒ 세무서, 홈택스, 사업장 세무사 발급

※ 부동산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, 그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**전입세대확인서(동거인 포함)**

⇒ 동주민센터 or 민원실5번 창구

또한, 세입자가 있다면 **임대차 계약서(세입자 전부)**